

##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21. 5. 26.(수)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 5. 회의내용

#### ① 성원보고

#### ② 국기에 대한 경례

#### ③ 개회선언

#### ④ 지난 회의록 확인

- 제19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

#### ⑤ 서면회의 결과보고

- 제20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
- 제20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

#### 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

**7] 의결사항**

**가. 2021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21-21-070)**

○ ‘2021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해 김우석 지상파방송 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 2021년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10개 방송사업자 10개 방송국에 대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재허가 심사기준 등의 세부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2021년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라디오(3개사) : (재)국악방송(국악FM), (재)기독교방송(광주FM), (재)극동방송(전북FM)

· DMB(7개사) : ① 전국(수도권 제외) : 한국방송공사, ② 지역MBC : 춘천문화방송(주), 부산 문화방송(주), 대전문화방송(주), 광주문화방송(주), 제주문화방송(주), ③지역민방 : (주)대전방송

**나.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 (2021-21-071)**

○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해 이소라 이용자 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위한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

구 분		사 업 자 명(서비스 명)	
기간 통신 (21개)	이동전화(3개)	SK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8개)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SK텔레콤(주), SK브로드밴드(주), (주)엘지헬로비전, (주)딜라이브, (주)현대HCN, (주)CMB	
	알뜰폰(10개)	(주)케이티엠모바일, (주)엘지헬로비전, (주)미디어로그, SK텔링크(주), (주)에넥스텔레콤, (주)한국케이بل텔레콤, (주)에스원, KB국민은행, (주)큰사람, (주)인스코비	
부가 통신 (19개)	앱마켓(4개)	Google LLC, Apple Inc, 원스토어(주), 삼성전자(주)	
	정보 유통 (6개)	포털	네이버(주), (주)카카오(다음), Google LLC(구글)
		SNS	(주)카카오(카카오톡), Facebook Inc, 네이버(주)(밴드)
	미디어 (5개)	OTT	Google LLC(유튜브), 넷플릭스서비스스코리아(넷플릭스), 콘텐츠웨이브(주)(웨이브)
		개인방송	트위치, (주)아프리카TV
	쇼핑 배달 (4개)	쇼핑	쿠팡(주), 11번가(주), 네이버(주)(네이버쇼핑)
배달		(주)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 밑줄 표시는 2021년도 신규평가 대상

## 8] 보고사항

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나.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등 2건의 보고사항에 대해 병합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한 후 고낙준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 이동통신 유통망 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고,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시 지원금 인상으로 인한 경쟁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목요일로 지정하여 최소 공시기간을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등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함

## 9] 기타사항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기로 함

## 6. 폐 회 (10:50)